

정부 부처별 성과관리 규정 분석 및 이해

| 정부지원 연구 성과물 활용 및 기술료 반납 절차와 규정





목차



연구 성과물

정부 지원 R&D 현황

정부 성과관리 규정의 구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체계

주요 부처별 성과관리 규정



연구 성과물의 정의



❖ 연구 성과는 학문적 의미의 개념에서
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가 있는
지식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수행으로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과학기술부, “연구성과관리매뉴얼”, 2007.,
2면)



연구 성과물의 정의



- **연구성과물** - 연구 성과 정보 + 연구 성과 통계
- **성과 정보** - 성과에 대한 원문정보로서 과학기술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후속연구,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산업·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 **성과 통계** - 성과활용 정보로서 통계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성과중심의사·분석·평가, 예산조정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성과 구분	성과정보	성과통계
기록물	논문, 지식재산권, 보고서	-
성과물 및 관련정보	생물소재, 생물정보, 화합물, 소프트웨어, 장비·기자재정보	-
기술정보	기술요약정보	기술료, 후속연구, 사업화
통계정보	-	학위배출, 장·단기 연수지원, 산업기술인력양성, 인력교류, 공동연구, 국제협력



연구 성과물의 귀속



특허법

第33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①發明을 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정부 지원 R&D 현황 [단위 : 억원]



처명	'07년 [A]	'08년 [B]	증감[B-A]	%
합계	97,629	108,596	10,967	11.2
과기부	23,460	25,428	1,968	8.4
산자부	21,836	23,732	1,896	8.7
방사청	12,584	14,823	2,238	17.8
교육부	10,323	11,663	1,340	13.0
정통부	7,833	8,056	223	2.8
농진청	3,674	3,941	268	7.3
중기청	3,600	4,300	700	19.4
건교부	3,278	3,467	190	5.8
복지부	1,808	2,291	483	26.7
해수부	1,789	2,125	336	18.8
환경부	1,678	1,859	181	10.8
농림부	699	1,112	413	59.0
식약청	586	626	40	6.9
기타 ¹⁾	3,004	3,262	258	8.6

※ 과기, 산자, 방위, 교육, 정통부 상위 5개 부처 비중 77%



정부 성과관리 규정의 구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 참여기업 :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 ❖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제15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2.8>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2.8>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제1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②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2.8>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6.29>



연구 성과 관리 [신설 예정]



제17조의2(연구개발 결과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 촉진)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 및 관련 정보를 취득한지 3개월 이내(단, 연구장비는 제16조의2 제5항에 의거 30일 이내)에 제2조 제10호의 성과관리전담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성과물별 전담기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운영되는 연구성과물별 전담기관은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물 및 관련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한다
- ③ 성과물별 등록절차 및 서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기술료의 징수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2.8>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2.8>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기술료징수 결과보고서

(단위 : 원)

최초기술실시계약연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기관유형	과제명[책임자]	총연구개발기간	총연구비집행액[정부+민간]	기술료납부기관(기업유형)	기술료				연구성과이용유형
										징수할총액	징수일	금회징수금액	미징수금액	



기술료의 사용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1. 정부출연금 × 0.5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퍼센트 이하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기술료의 사용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에 따라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1. 연구개발 재투자(「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관운영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기술료의 사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중 50퍼센트를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 한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산입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12.29>



제재사항 및 세부규정



제20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8, 2007.2.8>

4.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제21조 [세부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8>

1. 삭제 <2005.3.8>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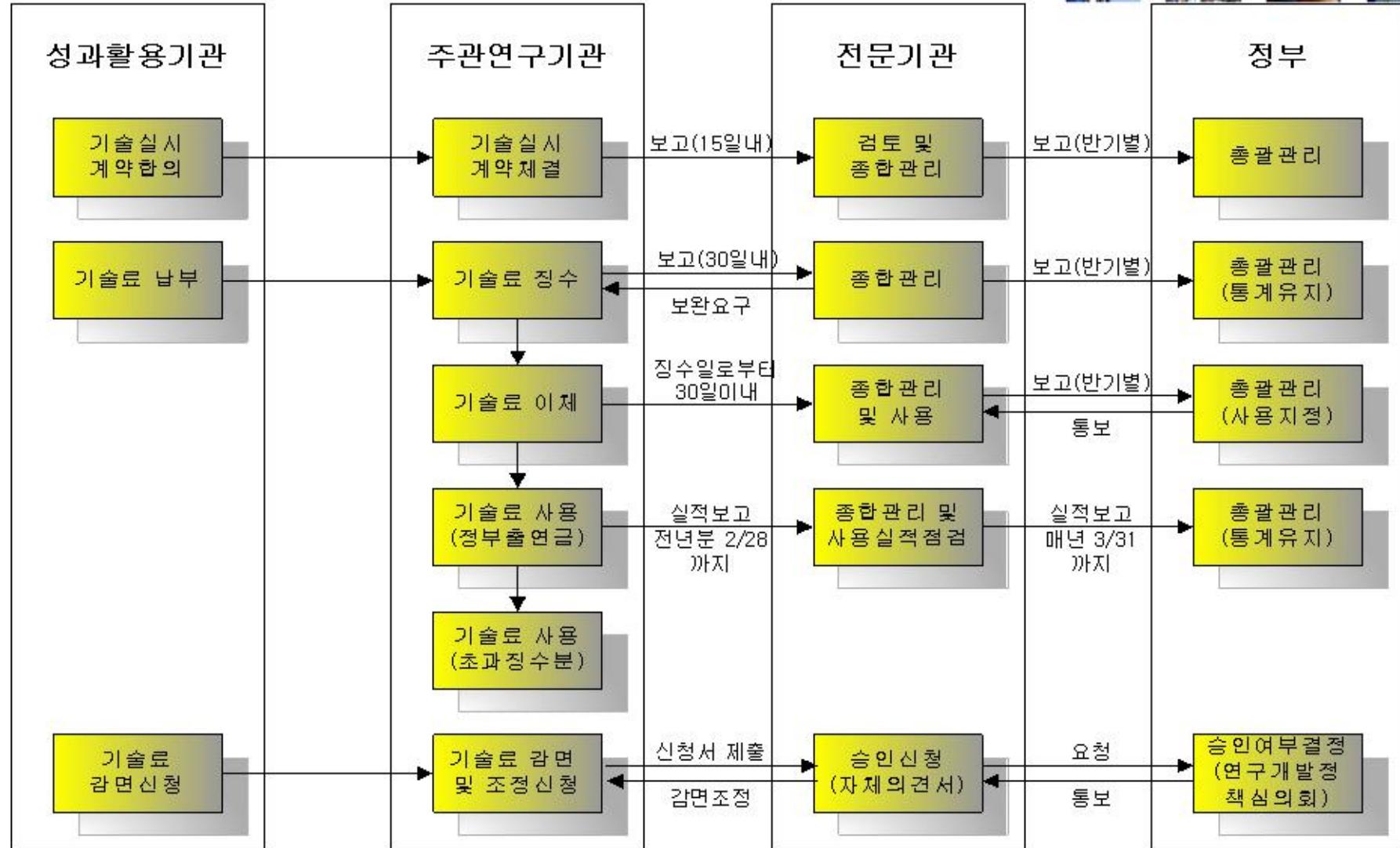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 간접경비(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체계



* 위의 절차 및 방법은 일반적 업무처리로서 처리방법 및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출처: 김해도 박사학위논문 p250, 2006.8)
YONSEI UNIVERSITY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9-42조)



징수대상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징수금액	정부출연금 이상			
징수시기	기술실시계약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감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액의 70%			
보고	계약체결 15일 이내에 보고, 징수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이체			
기술료 사용[%]	정부 납부	연구원 인센티브	연구개발재투자	대학 귀속
	20	50	15	15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제38-42조], 기초과학연구사업[제28-29조] 유사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1-32조)



징수대상	“성공” 으로 평가된 과제			
징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소기업 : 정부 출연금의 20%-대기업 : 정부 출연금의 40%			
징수시기	기술실시계약체결일부터 1년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중소기업 : 3년, 대기업 : 5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시 또는 조기 납부, 조기완료 평가된 우수과제 일부 감면최종평가결과 통보일 30일 이내 현금납부 - 40% 감면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 도래 전 현금 조기납부 - 30% 감면 [2,3차 -20,10%]			
보고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사용[%]	정부 납부	연구원 인센티브	연구개발재투자	대학 귀속
	60	20이상	120이상	80이내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7-42조)



징수대상				
징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본착수료 : 정부출연금[간접비제외]의 10% [참여기업은 면제]-경상기술료 : 순매출액의 5%이내[참여기업은 2.5%]			
징수시기	과제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			
감면	<p>중소기업 50% 감면 최종평가결과 통보일 30일 이내 현금납부 – 40% 감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 도래 전 현금 조기납부 – 30% 감면 [2,3차 -20,10%]</p>			
보고	실시계약 체결한 다음달 15일까지 통보, 징수 다음달 15일까지 납입 [연체이자]			
기술료 사용[%]	정부 납부	연구원 인센티브	연구개발재투자	대학 귀속
	20	50	15	1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7-29조]



징수대상	“불량” 으로 평가된 과제를 제외한 모든 실용화과제			
징수금액	정부출연금 상당액			
징수시기	기술실시계약체결일부터 5년이내 균등분할 납부			
감면	최종평가결과 통보일 30일 이내 현금납부 - 30% 감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 도래 전 현금 조기납부 - 20% 감면 [2차 - 10%]			
보고	결과통보 후 2개월 내 실시계약 체결, 실시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보고, 징수 후 15일 이내 보고			
기술료 사용[%]	정부 납부	연구원 인센티브	연구개발재투자	대학 귀속
	20	50	15	15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38조]



징수대상	성공으로 확정된 개발사업			
징수금액	비영리기관: 정부출연금의 20%이상 영리기관: 정부출연금의 30%이상 실증화사업과제: 정부출연금의 60%			
징수시기	기술실시계약체결일부터 5년이내 균등분할 납부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40% 감면 1차년도에 전액 납부 : 30% 감면 2차년도에 남은 잔액 모두 납부 : 20% 감면			
보고	6개월 이내 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사용[%]	정부 납부	연구원 인센티브	연구개발재투자	대학 귀속
	20	50	15	15



생각해 볼 문제들



기술료 정부 납부 필요성 - 출연금

참여기업의 연구 성과물 소유권

사업별 상이한 특허료 처리 규정

사업별 상이한 기술료 처리 규정

기술료 금액 한정

[항상 최선을 다하는 TLO]

Thank You !

